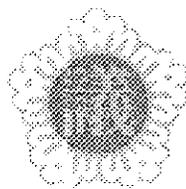


제227회 임시회
2004. 5. 28.(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4.5.28.(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4월 27일

○ 회부일자 : 2004년 4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4. 5. 24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 정 복 의원)

가. 제안이유

- IT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화상회의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실시간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이버 회의 참석자에 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 또한,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과 직접 자기소관 업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며,
- 행정심판위원회에만 지급되던 안전검토 수당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안전심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에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포함.
(안 제2조)
- 수당 등 지급기준 규정. (안 제3조)
 -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함.(안 제3조 제1항)
 - 공무원은 직접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이버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도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

이는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이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 받아 검토 보고하는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전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일비”를 “수당”으로 한다.

제2조중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를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당)①각종 위원회(사이버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 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수당</p>
<p>제2조(적용)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p>	<p>제2조(적용)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p>
<p>제3조(일비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하여 지급한다.</p>
<p>②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9) 위원회 참석수당

- ①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 ② 기준액(p 77)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 당	· 기본료 : 70,000원 · 초 과 : 3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 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1회에 한하여 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마. 목과 구분과 설정(p 160)

목번호	목구분	설 정
201	일반운영비	4. 운영수당 가. 위원회참석수당 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계상 가능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지방세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 등

□ 행정심판법시행령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등) ①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결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9. 3. 26>